

# 아주윤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아주산업 주식회사(아주 계열회사가 자신의 윤리경영 실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아주산업 주식회사 및 위탁 계열회사를 총칭하여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상설기구인 아주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윤리센터의 구성]

윤리센터는 회사의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감사 직속의 조직으로 하며,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ethics.aju.co.kr>)를 운영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원 또는 직원 일체를 말하며, 회사와 회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본 조 제1항의 임직원 이외의 자(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 ④ “윤리경매”란 임직원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수령한 선물 등(의례적 범위 내에서 수령한 것으로 금전 이외의 금품 등을 말한다)을 회사 내의 채널을 통해 경매에 부치는 행위로서 임직원만이 입찰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경매를 말한다.
- ⑤ “불이익처분”이란 제7조의 위반행위를 제보·신고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 지시, 강요 또는 위협 등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4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제 5 조 [윤리센터의 운영]**

① 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 보안서약의 실시
2. 모범사례의 접수 및 포상, 추천
3. 위반행위 신고, 제보의 접수 및 처리
4. 선물의 접수 및 처리
5. [신설] 윤리경영 실천 관련 컨설팅
6. 윤리경매의 실시
7. 윤리경영 관련 회의체 소집
8. 그 밖에 윤리 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윤리센터는 아주산업 뿐만 아니라 아주 계열회사의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전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제2장. 위반행위의 제보·신고 등**

#### **제 6 조 [제보·신고제도의 운영]**

윤리센터는 회사의 윤리행동규칙 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신고제도를 운영한다.

## 제 7 조 [제보·신고대상]

제보·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규범 및 윤리행동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제반 법령에 대한 위반
2.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부당한 지시 또는 강요
3.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당한 대우, 위협 등의 불이익 처분 행위
4. 그 밖에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행위
5. 본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을 교사, 방조하거나, 해당 사실의 은폐 또는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

## 제 8 조 [제보·신고방법]

- ① 임직원이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서면, 우편, 전자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통해 윤리센터에 제보·신고할 수 있다.
- ② 위반행위를 제보·신고하는 자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 9 조 [제보·신고의 처리]

- ① 윤리센터는 제보·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사실을 3영업일 이내에 제보·신고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련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단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보·신고의 내용이 제7조의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3. 제보·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내용의 타당성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제보·신고한 사항인지의 여부
  5. 기타 윤리센터의 처리가 적절한 사안인지 여부 등
- ② 윤리센터는 제보내용이 전항 각호에 따라 조사가 부적절한 사안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거나, 전항의 확인작업을 통하여 윤리센터가 처리절차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 사실을 제보·신고자에게 통지한다.
- ③ 윤리센터는 접수된 제보·신고사항을 별도의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④ 윤리센터는 제보·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관련 부서(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윤리센터의 처리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윤리센터는 제보·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제보·신고자에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보·신고자에 통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10 조 [제보·신고자의 성실의무]**

- ① 제보·신고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반사항을 제보·신고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오로지 음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보·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보·신고자는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제보·신고자의 보호]**

- ① 제보·신고자는 본 규칙에 따른 제보·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윤리센터는 제보·신고자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보·신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하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보·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는 윤리센터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전보 등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윤리센터는 제3항의 조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윤리경영의 실천**

#### **제 12 조 [윤리서약의 실시]**

- ① 윤리센터는 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윤리서약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윤리센터가 실시하는 윤리서약은 서약, 설문, 확인 등 기타 필요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 13 조 [선물 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선물 등은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윤리센터에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윤리센터에 신고, 접수한 선물 등은 해당자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 14 조 [선물 등의 처리]**

- ① 윤리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물건을 직접 기부하거나, 처분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② 윤리센터는 전항의 처분 방식으로 윤리경매에 부치거나 윤리경매의 실시를 위한 채널로서 별도의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③ 접수된 선물의 윤리경매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 관련 회의체 소집을 통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본 조의 실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에 사용한다.

**제4장. 보칙**

**제 15 조 [모범사례의 전파 등]**

윤리센터는 선행, 미담사례 및 고객만족서비스를 행한 임직원의 사례 등을 접수하고 이를 회사에 전파하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 [포상 및 징계의 건의]**

- ① 윤리센터는 위반행위 제보·신고 및 모범사례 추천 사항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보·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윤리센터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회사의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윤리센터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위반행위 제보·신고자가 제보·신고사항과 관련되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윤리센터는 회사에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1항에 의한 포상 수혜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윤리센터는 회사에 대하여 감경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7 조 [세부 지침의 운영]**

윤리센터는 본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본 아주윤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2018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